

의안번호	제 49 호
의 결 연 월 일	1999년 5 월 19 일 (제 43 회)

의 결 사 항
원안가결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9. 5 . 11 .

기획감사실장 심사 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제출 년월일 : 1999. 5. 11.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(소 관 부 서 : 농 정 과)

1. 제안이유 :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중 제6조 【용자금대부신청】 와 제11조 【대출 및 상환금회수】 규정이 서로 상충됨.

2. 주요골자 :



제6조 【용자금 대부신청】 제2항의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조항 삭제.

3. 근거법령 :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

4. 사전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.

- 첨부 1.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2. 신·구조문대비표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【용자금 대부신청】 제2항 삭제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 【용자금 대부신청】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(이하 “대부신청자”라 한다)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6조 【용자금 대부신청】 ①.....
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.	② (삭제)

